

안산시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-414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8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2019.04.23. 일부개정 된 「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위임 법령 및 목적을 명확히 함 (안 제1조)
- 나. 시행령 조문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(안 제3조)
- 다. 약칭으로 쓰인 “법”의 법명 명시 (안 제5조)
- 라.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조문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(안 제34조)

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붙임4(비용추계서 미첨부 자유서)

사전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- 입법예고기간 : 2020. 7. 8. ~ 7. 28.(20일간)

현행조례 : 붙임5

기타 참고사항 : 붙임6

- 방침결재문

불임 2

안산시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3조제1호”를 “영 제3조제1항제1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3조제1호나목”을 “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법 제4조제1항”을 “「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34조 중 “영 제41조제1항”을 “법 제49조제1항 후단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과		주택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주택과장 정관근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주거정비팀장 한민석
	담당자 성명·전화	주상철 (행정 2909)

〈신·구조문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조(목적)</u> 이 조례는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령 등에 따라 안산시 주민의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)</p> <p>① 영 <u>제3조제1호</u>에서 “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(이하 “시·도조례”라 한다)로 정하는 지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② 영 <u>제3조제1호나목</u> 단서에서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(이하 “기존주택”이라 한다)의 호수 또는 세대 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제5조(빈집정비계획의 수립) ① 법 <u>제4조제1항</u>에 따라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34조(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) 영 <u>제41조제1항</u>에서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의 연면적(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다)의 2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.</p>	<p><u>제1조(목적)</u> 이 조례는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)</p> <p>① 영 <u>제3조제1항제1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영 <u>제3조제1항제1호나목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빈집정비계획의 수립) ①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4조(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) 법 <u>제49조제1항 후단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